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76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763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3나5143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A

피고, 피상고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임준환, 임정혁

판결 선고 2024. 5. 30.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3나514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1. 원심의 기초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심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심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오경미

주심대법관김선수

대법관노태악

대법관서경환